

일터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. '22.1.27.

기업·기관의 **사업주 및 경영책임자**는
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**근로자의 안전과 건강**을
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행해야 합니다.



※ 자세한 내용은 [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\(www.kosha.or.kr\)](http://www.kosha.or.kr) 또는 [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\(www.koshasafety.co.kr\)](http://www.koshasafety.co.kr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